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49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군산시 정보화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7조(「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9조(「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라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군산시 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 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u>행정자치부장관</u>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장관</u>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 정안전부장관</u> ----- ----- . ④ (현행과 같음)</p>
<p>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p>	<p>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p>

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장관-----
 -----.

② -----
행정안전부장관-----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①·② (생 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④ (생 략)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 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u>행정안 전부장관</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 행정안전
부장관-----
 -----.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행정안전부
장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행정안전부장관-----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 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도지 사-----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 중소기업부 장관-----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2. (생략)</p> <p>3. <u>중소기업청</u>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p>	<p>제6조(제외대상)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중소벤처기업부</u> -----</p> <p>-----</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조(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① · ② (생략)</p> <p>③ 군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기업청장</u>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p> <p>-----</p> <p>-----</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u>중소기업청</u> 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 ----- ----- ----- <u>중소벤처기업부</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3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2. (생략)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u>국민안전처장관</u> 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 9.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행정안전부장관</u> ----- ----- 4. ~ 9.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0조(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p> <p>1. ~ 3. (생략)</p> <p>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중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사항에 포함</p>	<p>제7조 (기능)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행정안전부장관</u>-----</p> <p>-----</p> <p>-----</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행정안전부장관</u>-----</p> <p>-----</p> <p>-----</p> <p>-----.</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행 정안전부장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13조(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 8.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행정안전부령----- -----. 2. ~ 8.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4조(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 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	제2조(정의) ----- -----. 1. -----

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
 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
 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
 분을 말한다.

2.·3. (생략)

----- 행정안전부령-----

 -----.

2.·3.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495호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 중 “사고대비물질”을 “화학물질”로, “대응체계”를 “대응 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산시 환경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나. 지방환경관서, 소방서, 경찰서 담당과장

제5조제3항제2호나목 중 “화학·환경·보건”을 “화학·환경”으로 한다.

제8조 중 “과장”을 “계장”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공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한다.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협의회는 사고수습이 끝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할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위해성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u></p>	<p><u>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u></p>
<p>제2조(시장의 책무) (생략)</p>	<p>제2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신설></p>	<p>② 시장은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 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 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 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 다.</p>	<p>제4조(위원회 설치) -----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p>	<p>2. 화학물질----- 대응 대책</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 -----.</p>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
관리 담당국장, 소방서장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
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략)

나.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라. (생략)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정보 공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1. -----

가. 군산시 환경정책과장, 안전총괄
과장

나. 지방환경관서, 소방서, 경찰서
담당과장

2. -----

가. (현행과 같음)

나. 화학·환경 -----

다.·라.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등) -----

----- 계장-----.

제11조(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공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
리를 실현한다.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
기 위하여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
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보고서
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

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2

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제12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1

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협의회는 사고수습이 끝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① 시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할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 2. 사업장 관계자
-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위해성
-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496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군산시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

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 산정 등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

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조보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분할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회계 설치 등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부대사업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제13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12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100~300톤/일	30㎡(9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300~500톤/일	20㎡(6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3~4.5평)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100평)	-
	500톤/일 초과	500㎡(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의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의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497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촉진하기” 를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로, “지역경제” 를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나 건설사업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항 중 “지역업체” 를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공사 참여 지역 근로자 비율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 안정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7조)제1호 중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를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제13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11명” 을 “1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되며” 를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원” 을 “시의원 2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 을 “사람 3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계 교수, 전문가” 를 “교수 및 전문가 3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군산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군

산시민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 -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신설></p>	<p>제2조 (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나 건설사업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p> <p>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제3조 (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 --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p>
<p>⑥ (생략)</p> <p><신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시장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한다.</p>
<p>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생략)</p> <p><신설></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실태조사) ① (생략)</p>	<p>제5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④ (생략)

<신설>

제6조 (생략)

<신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공사 참여 지역 근로자 비율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 안정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1. -----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

2. ~ 5. (생략)

<신설>

6. (생략)

<신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2. (생략)
- 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신설>

5. (생략)

③ (생략)

<신설>

2. ~ 5. (현행과 같음)

6.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4명 -----
-----.

② -----
--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

- 1. ----- 시의원 2명
- 2. (현행과 같음)
- 3. ----- 사람 3명
- 4. -----
-- 교수 및 전문가 3명
- 5. 지역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수급체 등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

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군산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군산시민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5조(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6조 ~ 제19조(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9조·제10조(생략)

제11조 ~ 제14조(생략)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498호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군산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복지 사업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군산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구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4.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 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자금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남·여 한쪽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군산시의회 의원
3.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학식 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및 활동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18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교육·홍보
3.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499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p>

군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규칙 제64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4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7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 개정) 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내무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10조 중 “내무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7조(「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부” 를 “농림축산식품부” 로 한다.

제8조(「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건설부” 를 “국토교통부” 로 한다.

제9조(「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u>안전행정부</u>에서 마련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청백-e 시스템"이라 한다),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p> <p>3. ~ 1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행정안전부</u>----- ----- ----- ----- -----.</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u>안전행정부 장관</u>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 ----- ----- <u>행정안전부 장관</u>-----.</p>
<p>제19조(평가)①·② (생 략)</p> <p>③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u>안전행정부</u>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p>	<p>제19조(평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행정안전부</u>----- -----.</p>
<p>제21조(제도지원)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u>안전행정부 장관</u>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21조(제도지원) ----- ----- ----- <u>행정안전부장관</u>-----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u>외교통상부장관</u>이 정하는 「지역별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 한다. 다만 군산시에 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 ----- ----- <u>외</u> <u>교부장관</u>----- ----- .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군산시 재무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 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p> <p>② (생략)</p> <p>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등)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 <u>행정안전부장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등) 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 .</p>

<p>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p>
<p>제170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p>	<p>제170조(국가규정의 준용)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제172조(기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72조(기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 <u>행정안전부장관</u>-----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산업입지보조금)① (생략)</p> <p>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u>산업자원부장관</u>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제5조(산업입지보조금)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u>내무부장관</u> 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제110조(자산 재평가)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u>내무부</u> 의 자산 재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0조(자산 재평가) ----- ----- ----- <u>행정안전부</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조(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품구입) ①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u>농림부</u>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제4조(부품구입) ①----- ----- <u>농림축산식품부</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 단가와 <u>건설부</u> 표준단가에 의한다.	제10조(공사비 산출) ----- ----- <u>국 토교통부</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예산안의 작성)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7년 11월 1일

군산시 규칙 제648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제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 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음식물 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을 위한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u>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 (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 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u>제9조</u>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 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 과 같다.</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조례 <u>제12조</u>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p> <p>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u>제14조</u>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p>	<p><u>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 -----.</p>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u>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 ----- ----- ----- -----.</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 <u>제16조</u> ----- ----- -----.</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u>제10조</u> ----- ----- -----.</p> <p>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 <u>제 11조</u> -----</p>

<p>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생 략)</p> <p>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 례 <u>제17조</u>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 상으로 공급한다.</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 <u>제 14조</u>-----</p> <p>-----</p> <p>-----.</p>
--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침에 등에 의한 수수료 (단 위 : 원)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침에 등에 의한 수수료 (단위:원)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2%)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L	180	20	200	일반 주택	1회용	5L	220	30	250
음식점	1회용	20L	720	80	800	음식점	1회용	20L	880	120	1,000
		120L	4,320	480	4,800			120L	5,280	720	6,000
공동 주택	1회용	120L	4320	480	4,800	공동 주택	1회용	120L	5,280	720	6,000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제4조와 관련)

(단위 : 원)

1. 납부칩

구 분	판매단위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이윤 (12%)	판매가격
일반주택	1회용	5L	220	30	250
음식점	1회용	20L	880	120	1,000
		120L	5,280	720	6,000
공동주택	1회용	120L	5,280	720	6,000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70원

군산시 고시 제2017-138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

군 산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칭	군산시장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향	본 사업은 군산시 옥서면(선연리, 옥봉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차집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것이며,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선연리, 옥봉리)		
	면적 (㎡)	0.559km ²	영구점용	2,234m ²
			일시점용	16,018m ²
계	18,252m ²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종류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명칭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군산처리구역(옥서지구) 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선연리, 옥봉리) 일원			
사업시행기간	2017. 12. ~ 2019. 12.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첨부 참조			

※ 관계 설계도서 공람장소 : 군산시 수도사업소(하수과), 공사현장사무실(착공후)

군산시 고시 제2017-13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174(2016.12.30.)호로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내초동 완충녹지 조성공사” 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11월 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내초동 96-7번지의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 나. 명 칭 : 내초동 완충녹지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완충녹지 A=69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유)씨앤엘개발
 - 나. 주 소 : 군산시 새만금북로 519(내초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16.12.30. ~ 2017.10.31. → (변경) 2016.12.30. ~ 2018.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내초동 96-7	임	300	300	이용일	진주시 완산구 오공로 100, 301동 703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나운동지점)	
2	내초동 96-8	임	238	238	(유)씨앤엘개발	군산시 새만금북로 519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나운동지점)	
3	내초동105-5	전	493	125	군산시	-			
4	내초동148-7	도	50	30	국(건설부)	-			
	계		1081	693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상기 토지 및 시설물

군산시 고시 제2017-140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11. 1.

군 산 시 장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성명(법인명)	전라북도지사 (교통물류도로과)		
하천명칭	미제천	하천등급	지방 2급 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580-13, 170-27, 172-7 ○ 옥구~회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야교 설치 (L=82.5m, B=10.5m) 따른 하천점용		
점용면적	505㎡ (일시 505㎡, 영구 255㎡)		
최초허가일	2017년 11월 01일		
점용기간	2017년 11월 01일부터 ~ 영구 (일시점용 : 2017년 11월 01일 ~ 2018년 12월 29일)		